

감사위원회 규정

주식회사 실리콘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이 규정에서 '내부통제제도'라 함은 기업운영의 효율성·효과성 확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관련 법규·정책의 준수 등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② 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조직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 ③ 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④ 이 규정에서 '내부감사부서'라 함은 회사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시행 및 결과보고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내부조직도상의 부서를 말한다.

제4조(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 ①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 6. 이사의 보고 수령
 -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

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2. 외부감사인의 선정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6조(구성)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이어야 하고,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의 사임, 해임,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독립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의

제8조(종류)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한다.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일 3일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1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부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의한다.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②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감사에 관한 사항

1. 업무, 재산 조사
2. 자회사의 조사
3. 이사의 보고 수령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6. 감사계획 및 결과
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8.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9.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0.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11.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승인
12.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13.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14.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15.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16.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7.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제13조(관계인의 출석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14조(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감사의 구분·방법

제15조(감사의 기능별 구분)

감사는 기능별로 경영감사, 업무감사, 재무감사, 준법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① 경영감사는 위험 및 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접근방식과 절차 등의 적정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보좌하기 위한 일련의 감사과정을 의미한다.
- ② 업무감사는 조직구조 분석이나 업무분배방식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 및 준법감사부문 이외의 조직 내 업무절차 및 체계를 점검·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 ③ 재무(회계)감사는 회계정책, 회계방침 또는 회계처리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회계정보, 재무보고서의 정확성, 신뢰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 ④ 준법감사는 관계법규 및 정관, 사규 등의 준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위해 설치된 회사 내 준법감사체계(또는 준법통제제도)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 ⑤ IT감사는 정보기술 부문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제16조(감사의 실시방법)

위원회는 기능별로 분류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상감사, 종합감

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 ① 일상감사는 회사의 업무 중 위원회가 정한 일정 범위의 업무와 중요 서류에 대하여 최종결재자의 결재 전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동 건에 대한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동 건과 같은 사안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 ② 종합감사는 정기적인 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경영, 업무, 재무, 준법, IT 등 기능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기능별 업무수행체계와 과정의 유효성을 평가한 후에 문제점을 제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 ③ 특별감사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17조(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 ① 위원회는 기업의 부정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의 대응 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이사 및 집행임원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

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실시

제18조(이사에 대한 보고요구)

- ① 위원회는 회사재산의 보전에 중대한 손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사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이사로부터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위원회로서 조언 또는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내부감사부서와의 연계)

- ①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을 포함한다)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계획과 절차 및 감사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 달성을 수 있도록 한다.
- ②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특정사항의 조사를 신뢰할 수 있다.

제20조(내부회계관리제도)

- ①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

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신인이 이사회임을 기술
2. 경영진이 선택한 내부통제체계와 이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위원회는 관리감독책임이 있다는 사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추가적인 검토 절차를 수행한 경우 해당 사실
4. 평가기준일에 평가 대상 기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의견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6.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7.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평가 기준으로 평가·보고기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8. 중요성의 관점에서 평가·보고기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론
9.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
10.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또는 이미 수행 중인 절차
11. 보고서 일자
12. 감사위원의 서명 날인
1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 및 자금 관련 부정 위험에 대한 감사인과의 의사소통 내역

제21조(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적정성 평가)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요청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괄하는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평가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

1. 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시스템 작동여부
2. 영업계획, 전략수립 과정상의 준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여부
3. 회계정책 또는 추정변경의 타당성, 회계처리방법 등의 적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여부
4. 정보의 보고, 공유, 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
5. 부서별 업무성과 분석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여부
6. 내부통제관련 임직원 교육계획의 적정성 여부
7.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 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8. 조직 구조상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

제22조(중요 회의에의 출석)

- ① 감사위원은 경영방침의 결정 경과,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사록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제6장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등

제23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 달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회의 회계에 관한 감사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고 그 조정을 도모한다.
-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한다.
-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외부감사인 선정 등)

-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별첨 1. 외부감사인 선정 기준] 참조

1. 감사시간 · 감사인력 ·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3. 전기 외부감사인과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기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나. 전기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역

다. 해당 사업연도의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개최횟수, 주요 발언 내용 등

라.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⑤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평가를 하여 평가한 내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26조(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7장 감사결과의 보고

제27조(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8조(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 ①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9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감사위원회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감사의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외부감사인 선정 기준]

- ① 감사위원회는 제안에 참여하고자 하는 감사인후보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고, 감사인후보로부터 제안서를 제안서 모집 공고의 내용대로 접수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인후보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대면회의를 개최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회사에서 설정한 '외부감사인후보 평가기준' [별첨2]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으로 선정된 자로부터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 등을 확정한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인으로 선정된 자와 협의하여 해당 내용을 변경하여 확정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업무 진행을 위해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첨2. 외부감사인후보 평가기준]

외부감사인후보 평가기준

| | |
|-----------|--------|
| 사업자명(후보자) | OO회계법인 |
| 평가점수 | |

| 구 분 | 평가 항목 | | 배점 | 평점 | 평가근거 | |
|------|--------------|------------------|----------------|-----|------|--|
| 입찰가격 | | | 10 | | | |
| 감사품질 | 90 점 | 감사업무 수행팀의 역량 | 감사담당자의 경험 | 15 | | |
| | | | 감사담당자의 산업전문성 | 13 | | |
| | | | 파트너의 업무부담 | 3 | | |
| | | | 매니저 및 스텝의 업무부담 | 6 | | |
| | | | 징계 | 3 | | |
| | 소계 | | | 40 | | |
| | 회계법인의 역량 | 내부품질관리 | 10 | | | |
| | | 독립성 및 법규준수 | 5 | | | |
| | | 과거 수행업무의 적정성 | 5 | | | |
| | 소계 | | | 20 | | |
| | 감사수행 절차의 적정성 | 투입인력 및 투입시간의 적정성 | 15 | | | |
| | | 파트너 및 매니저의 업무관여도 | 6 | | | |
| | | 위험분야에 대한 감사계획 | 6 | | | |
| | | 전문가 활용 | 2 | | | |
| | | 감사위원회와의 의사소통 | 2 | | | |
| | 소계 | | | 30 | | |
| | | | | 100 | | |

| | |
|--------------|--|
| 평가자 의견 | |
| 위와 같이 평가함. | |
| 평가자 성명 : (인) | |

※ '외부감사인후보 평가기준'은 회사의 상황에 맞게 수정 사용할 수 있다.